

##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「김포시 보육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8월 24일

김 포 시 장

### 1. 자치법규명 : 김포시 보육 조례

### 2. 제정이유
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개정사항과 인용사항 등을 정비하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라 센터 이용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개정사항 정비

- 위원 15명 → 20명(안 제5조제1항)
- 보육업무 담당국장 → 보육업무 담당국·과장(안 제5조제2항)
- 위탁기간 3년 → 5년(안 제14조제2항)

#### 나. 인용사항 정비

-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→ 위원의 임기(안 제6조)
- 보조금의 지급 등 → 비용(안 제5장)
- 보조금의 지급 → 비용의 보조(안 제29조)
- 비용의 보조와 관련된 인용사항 정비(안 제29조제1호)

#### 다.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규정 신설

- 상위법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, 감면 및 반환 기준 신설(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3까지)

#### 라. 법제처 “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

- 「영유아보육법시행령」 →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
- 호선하고, 개의하고 → 호선(互選)하고, 개의(開議)하고 (안 제5조)
- 위원 1/3이상, 1인 →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, 1명(안 제8조)
- 범위 안 → 범위(안 제10조)
- 의한 → 따른(안 제24조제1항)

#### 4. 자치법규안 : 별도첨부

#### 5. 의견제출

- 제출기한 : 2022. 8. 24. ~ 9. 13.(20일간)
-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우편 등
- 기재내용
  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 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제출기관 : 김포시장(김포시청 보육과)
  - 주 소 :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49(사우동) 6층(우편번호 : 10108)
  - 전 화 : 031)980-5324, FAX : 031)980-5339

## 6. 참고사항

-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(의회심의)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.
-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 례 안 명 : 김포시 보육 조례

성명 (단체명) :

주 소 :

전 화 번 호 :

입법예고내용	의 건	비 고

##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시 보조금” 을 “김포시 보조금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15명” 을 “20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호선하고” 를 “호선(互選)하고” 로, “사람중에서 김포시장(이하” 를 “사람 중에서 김포시장(이하” 로, “담당국장” 을 “담당국·과장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구성비율은 「영유아보육법시행령」 제6조제3항” 을 “구성비율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6조제3항” 으로, “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” 을 “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” 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위원의 임기 및 해촉)” 을 “(위원의 임기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임” 을 “위촉직 위원 사임” 으로, “인하여 새로” 를 “새로” 로, “하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” 를 “한다” 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위원 1/3이상” 을 “재적위원 3분의 1 이상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 반수” 를 “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1인” 을 “1명” 으로, “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” 를 “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” 로 한다.

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척된다” 를 “제척(除斥)된다” 로 한다.

제8조의3 중 “「영유아보육법시행령」 제10조의3제2항” 을 “「영유아보육

법 시행령」 제10조의3제2항” 으로 한다.

제10조 본문 중 “범위 안” 을 “범위” 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「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” 를  
“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” 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4조” 를 “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4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의사,영유” 를 “의사, 영유” 로, “전문가등” 을 “전문가 등” 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3년” 을 “5년” 으로, “한차례” 를 “한 차례” 로 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 을 “다음 각 호의” 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법 시행령 제24조” 를 “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4조” 로 한다.

제3장에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이용료 등)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과 별표 2의 범위에서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(이하 “이용료 등” 이라 한다)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,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또한, 징수한 이용료 등은 센터 운영 세입·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해야 한다.

제17조의3(이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#### 1. 시설 사용료

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(주관)하거나 후원하는 경우: 전액

나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: 전액

## 2. 프로그램 이용료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: 전액
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자녀: 전액

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: 전액

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: 전액

마. 「김포시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」에 따른 다  
자녀가정: 50퍼센트

바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자녀:  
50퍼센트

사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: 50퍼센트

②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,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1조제1항 본문 중 “시립어린이집을 「사회복지사업법」”을 “시립어린이집을 「사회복지사업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2”를 “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2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5조”를 “「영유아보육법

시행규칙」 제25조” 로 한다.

제28조 중 “인하여 시설” 을 “시설” 로 한다.

제5장의 제목 “보조금의 지급 등” 을 “비용” 으로 한다.

제29조의 제목 “(보조금의 지급)” 을 “(비용의 보조)” 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 을 “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” 으로 한다.

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2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한다.

1. 어린이집의 설치, 증축·개축 및 개수·보수 비용
2. 보육교사(대체교사 포함) 인건비
3. 교재·교구비
4.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비
5.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
12.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보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제31조 중 “자는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 을 “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 로 한다.

제35조 중 “「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” 를 “「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 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,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호·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센터 이용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기획담당관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보육과 최명순
	팀장 직위·성명	보육정책팀장 조문순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시설서기보 조진희(☎5324)

[별표 1]

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사용료 (제17조의2 관련)

구 분		기준	사용료		
명칭	사용목적		면적기준(m <sup>2</sup> )	금액	
기본 시설	공연장	공연, 발표, 교육행사 등	1회 2시간	165 이하	20,000원
	회의실	회의, 학습 등	1회 2시간	34이상~ 165이하	20,000원
부속 설비	냉난방비		1회 2시간	10,000원	
	음향기기		1회 2시간	20,000원	
	영사기		1회 2시간	10,000원	
	조명	일반	1회 2시간	10,000원	
		종합	1회 2시간	15,000원	

※ 이용 주의사항

- ① 기준시간 2시간으로, 사용 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으로 봄
- ② 시간당 요금은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적용
- ③ 초과시간 30분 이내의 경우 시간당 요금의 50퍼센트, 30분 초과 시 100퍼센트 적용
- ④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
- ⑤ 설비 설치 및 준비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

[별표 2]

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(제17조의2 관련)

구 분		대여(이용)기준	금액	비고
명칭	사용목적			
상담	일반상담	-	무료	* 검사료 별도
	전문상담	1회	50,000원	* 검사료 별도
장난감 도서관	개인	15일	연 10,000원	
교육 및 세미나 (부모, 보육 교직원)		-	무료	* 교재, 재료비 별도
영유아 교육·체험 프로그램		-	무료	* 교재, 재료비 별도
안전·문화 체험관		-	무료	
아이사랑놀이터		-	무료	
어린이 공연		1명	5,000원 이하	

[별표 3]

**이용료 등 반환 기준**(제17조의3 관련)

○ 시설 사용료

반환 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 이용 취소 및 중지된 경우	전액
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하 또는 중지된 경우	
시설 이용 예정일 전일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	

○ 프로그램 이용료

반환 사유 발생일		반환금액		
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		수강료 전액		
프로그램 개설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				
프로그램 개설 후	프로그램	총 수업 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	수강료의 2/3	
		총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	수강료의 1/2	
		총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난 후	반환 안함	
	장난감 도서관	납부일로부터 30일 미만	서비스 미이용	이용료 전액
			서비스 이용	이용료의 1/2
		납부일로부터 30일 이상 ~ 90일 미만	서비스 미이용	이용료의 1/2
			서비스 이용	반환 안함
	납부일로부터 90일 이상	서비스 미이용	반환 안함	
서비스 이용		반환 안함		
비 고	총 수업 시간은 강좌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			

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 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<u>시 보조금</u>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, 보호자의 사회적·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 김포시 보조금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1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<u>호선</u>하고,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<u>사람</u>중에서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관계 공무원의 경우 보육업무 <u>담당국장</u>을 당연직으로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③ 위원의 <u>구성비율</u>은 「영유아보육법시행령」 제6조제3항을 따르고, 위촉직 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20명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 <u>호선(互選)</u>하고----- ----- <u>사람</u> 중에서 김포시장(이하 ----- ----- -- <u>담당국·과장</u>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구성비율</u>은 「영유아보육법시행령」 제6조제3항----- ----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(생략)</p>	<p>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.

제8조 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시장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(생략)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⑤·⑥ (생략)

제8조의2 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~ 4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8조의3(위원의 위촉해제) 시장은 제 5조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「영유아보육법시행령」 제10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----- 새로 ----- 한다.

제8조 (위원회의 회의) ① -----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-----.

② -----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1명-----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의 -----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 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----- 제척(除斥)된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3(위원의 위촉해제) ----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0조의3 제2항 -----.

제10조(위원회의 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1조(설치) ① (생략)

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2조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.

제13조(구성) ① (생략)

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.

③ (생략)

④ 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, 영유아 및 아동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의 위탁) ① (생략)

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한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의 수당) -----  
-----  
----- 범위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1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4조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의사, 영유-----  
전문가 등-----  
-----  
-----.

제14조(운영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5년-----  
-----  
한 차례-----.

③·④ (생략)

제15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제17조(센터의 재정)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위탁의 취소) ---- 다음 각 호의 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센터의 재정) ① -----  
----- 「영유아보육  
법 시행령」 제24조-----  
-----  
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7조의2(이용료 등)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과 별표 2의 범위에서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(이하 “이용료 등” 이라 한다)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,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또한, 징수한 이용료 등은 센터 운영 세입·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해야 한다.

제17조의3(이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)

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시설 사용료

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(주관)하거나 후원하는 경우:

전액

나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: 전액

2. 프로그램 이용료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: 전액
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자녀: 전액

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: 전액

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: 전액

마. 「김포시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: 50퍼센트

바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자녀: 50퍼센트

사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: 50퍼센트

②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,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최초 위탁시에는 공개경쟁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.

제24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25조(위탁의 취소)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28조(손해배상)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

----- 시립어린이집을 「사회복지사업법」 -----

② -----  
----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2-----  
-----.

제24조(수탁자의 의무) ① -----  
----- 따른 -----  
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위탁의 취소) ① -----  
----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5조-----  
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손해배상) -----  
----- 시설-----  
-----

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

제29조(보조금의 지급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관계 법령과 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
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등 지원
3.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[중전의 29조3호는 삭제, 29조 4호에서 이동]
4. 교재·교구비 [29조 5호에서 이동]
5. 대체인력 인건비 [29조 6호에서 이동]
6. ~ 10. (생략)
11.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비
12. (생략)
13.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<신설>

14. (생략)

제31조(정산보고) 보조금을 지원받은

-----.

제5장 비용

제29조(비용의 보조) -----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-----

1. 어린이집의 설치, 증축·개축 및 개수·보수 비용
  2. 보육교사(대체교사 포함) 인건비
  3. 교재·교구비
  4.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비
  5.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
  6. ~ 10. (현행과 같음)
- <삭제>
11. (현행 제12호와 같음)
- <삭제>
12.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보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14.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정산보고) -----

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5조(준용)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, 「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따른다.

<신 설>

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-----

-----.

제35조(준용) -----

----- 「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-----

--.

[별표 1]

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사용료 (제17조의2 관련)

구 분			기 준	사 용 료	
명칭	사용목적	면적기준(㎡)		금액	
기본 시설	공연장	공연, 발표, 교육행사 등	1회 2시간	165 이하	20,000원
	회의실	회의, 학습 등	1회 2시간	34이상~165이하	20,000원
부속 설비	냉난방비		1회 2시간	10,000원	
	음향기기		1회 2시간	20,000원	
	영사기		1회 2시간	10,000원	
	조명	일반	1회 2시간	10,000원	
		종합	1회 2시간	15,000원	

※ 이용 주의사항

- ① 기준시간 2시간으로,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 시간으로 봄
- ② 시간당 요금은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적용
- ③ 초과시간 30분 이내의 경우 시간당 요금의 50퍼센트, 30분 초과시 100퍼센트 적용
- ④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
- ⑤ 설비 설치 및 준비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

<신 설>

[별표 2]

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(제17조의2 관

련)

명칭	구 분		대여 (이용) 기준	금액	비고
	사용목적				
상담	일반상담		-	무료	* 검사료 별도
	전문상담		1회	50,000원	* 검사료 별도
장난감 도서관	개인		15일	연 10,000원	
교육 및 세미나 (부모, 보육 교직원)			-	무료	* 교재 재 료비 별도
영유아 교육 체험 프로그램			-	무료	* 교재 재 료비 별도
안전·문화 체험관			-	무료	
아이사랑놀이터			-	무료	
어린이 공연			1명	5,000원 이하	

<신 설>

[별표 3]

**이용료 등 반환 기준** (제17조의3 관련)

○ 시설 사용료

반환 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 이용 취소 및 중지된 경우	전액
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하 또는 중지된 경우	
시설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	

○ 프로그램 이용료

반환 사유 발생일		반환금액		
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		수강료 전액		
프로그램 개설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				
프로그램 개설 후	프로그램	총 수업 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	수강료의 2/3	
		총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	수강료의 1/2	
		총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난 후	반환 안함	
	장년감 도서관	납부일로부터 30일 미만	서비스 미이용	이용료 전액
			서비스 이용	이용료의 1/2
		30일이상~90일미만	서비스 미이용	이용료의 1/2
서비스 이용			반환 안함	
납부일로부터 90일 이상	서비스 미이용	반환 안함		
	서비스 이용	반환 안함		
비 고	총 수업 시간은 강좌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			

<신 설>

[별지 제1호서식]

이용료(수강료) 감면 신청서			
이 용 자 (수 강 생)	시 설 명 (강좌명)	( 반)	
	성 명	생년월일	
	주 소	연 락 처	
감면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50퍼센트 감면 <input type="checkbox"/> 100퍼센트 감면		
감면사유			
실제납부 이용료(수강료) (시설에서 산정기제)	금	원 (₩	)
이용기간(수강기간)	~		
「김포시 보육 조례」 제17조의3에 따라 이용료(수강료) 감면을 신청 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			
김 포 시 장 귀하			

<신 설>

[별지 제2호서식]

이용료(수강료) 반환 신청서				
이 용 자 (수 강 생)	시 설 명 (강좌명)	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반)		
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연 락 처	
반환 이용료(수강료) (시설에서 산정 기재)		금	원 (₩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
감면대상자 여부		감면,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비감면		
실제납부 이용료 (수강료)	금	원 (₩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	
이용기간 (수강기간)	~			
계좌입금 통 장	거래은행		예금주명	
	계좌번호			
반 환 신청사유				
<p>「김포시 보육 조례」 제17조의3에 따라 이용료(수강료) 반환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</p> <p><b>김 포 시 장 귀하</b></p>				

**영유아보육법**

[시행 2022. 6. 22.] [법률 제18620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- 제6조(보육정책위원회)**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·사업·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6. 7., 2018. 12. 11., 2020. 12. 29.>
-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보육정책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보육전문가,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,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1. 6. 7.>
-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영유아보육법 시행령**

[시행 2022. 7. 21.] [대통령령 제32627호, 2022. 5. 9., 타법개정]

- 제6조(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)** ①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중앙보육정책위원회”라 한다)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지방보육정책위원회”라 한다)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**20명**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10. 3. 15., 2012. 6. 29., 2021. 3. 2., 2021. 12. 7.>
-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<개정 2010. 3. 15., 2011. 12. 8.>
1.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,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표

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2.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

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,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, **관계 공무원**(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)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**위원의 구성비율**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3. 15., 2011. 12. 8., 2012. 6. 29.>

1.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: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

2. 보육전문가: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

**3. 관계 공무원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**

4. 어린이집의 원장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

5. 보육교사 대표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[전문개정 2009. 6. 30.]

**제12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)**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·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” 라 한다)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 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설치·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” 라 한다)에는 자료실,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0. 3. 15., 2013. 12. 4., 2014. 2. 11.>

**제14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)**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3. 12. 4., 2017. 6. 20., 2022. 6. 7.>

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3. 12. 4., 2022. 6. 7.>

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(常勤)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3. 12. 4., 2022. 6. 7.>

[전문개정 2009. 6. 30.] [제목개정 2013. 12. 4.]

**제15조(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)**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.

1.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2. 6. 7.>

**제24조(비용의 보조)**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 <개정 2010. 3. 15., 2011. 12. 8., 2012. 2. 3., 2013. 12. 4.>

1. 어린이집의 설치, 증축·개축 및 개수·보수 비용
2. 보육교사 인건비
3. 교재·교구비
4.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비
5.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
6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
7.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 <개정 2010. 3. 15.> [전문개정 2009. 6. 30.]

**제26조의2(업무의 위탁)**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12. 4.>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2.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
3.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
4.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
5.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②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

2.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

3. 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

4.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
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·단체 등(이하 이 조에서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,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2. 6. 29., 2015. 9. 15.>

1.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

2.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3.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법 제23조제5항 및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

4.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,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

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, 신청서류,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 2. 3.]

[중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<2012. 2. 3.>

##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[시행 2022. 6. 22.] [보건복지부령 제895호, 2022. 6. 22., 일부개정]

제2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)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른

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 라 한다)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, 영양사, 간호사,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1. 12. 8., 2013. 12. 5., 2015. 9. 18.>

## 「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」 page 492

다. 업무위탁(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, 제26조의2, 시행규칙 제39조의3)

업무위탁은 5년으로 하되,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후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.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.

※ 다만,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 조정 가능

##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

[시행 2021. 7. 2.] [경기도김포시조례 제1824호, 2021. 7. 2., 일부개정]

제14조(협약체결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.<개정 2021.7.2.>

② 협약서에는 위탁기관,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, 수탁기관의 의무·준수사항,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,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④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.

##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[시행 2022. 6. 29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**제14조(사용료)**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,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)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31., 2022. 4. 20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.

**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. 20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. 20.>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 <신설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 <신설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

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[전문개정 2008. 12. 26.]

##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

[시행 2019. 12. 15.] [행정안전부고시 제2019-89호, 2019. 12. 9., 일부개정]

- 제10조(행정재산 관리위탁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관리수탁자)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-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,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,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<별표 4>의 내용에 따른다.
- ⑤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 단, 사무의 민간위탁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## 김포시 보육 조례

[시행 2021. 7. 13.] [경기도김포시조례 제1825호, 2021. 7. 2., 일부개정]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 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, 보호자의 사회적·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유아”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2. “보육”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3. “어린이집”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
4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
###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

**제3조(보육정책위원회 설치)**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김포시 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·위탁에 관한 사항
3.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<개정 2019.4.17.>

**제5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김포시장(이하“시장“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관계 공무원의 경우 보육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<개정 2019.4.17>

1.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
2. 보육전문가
3. 관계공무원
4. 어린이집 원장
5. 보육교사 대표

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「영유아보육법시행령」 제6조제3항을 따르고, 위촉직 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4.17.>

**제6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**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9.4.17>

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9.4.17>

1. <삭제 2019.4.17>
2. <삭제 2019.4.17>
3. <삭제 2019.4.17.>

**제7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8조 (위원회의 회의)**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시장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

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7.9.27>
-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.

**제8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
- 2.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
- 3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- 4.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9.4.17.]

**제8조의3(위원의 위촉해제)** 시장은 제5조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「영유아보육법시행령」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9.4.17.]

**제9조(의견청취)** ① 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1. 관련부서의 설명 또는 자료·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
- 2. 이해관계인·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

**제10조(위원회의 수당)**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0.9.29.>

**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(개정 2014.2.12)**

- 제11조(설치)**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,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“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하여야 한다. (개정 2014.2.12)
- 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2조 및 「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.

**제12조(기능)**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(신설 2014.2.12)
  - 1의2.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  2.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
  3.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·구직 정보의 제공
  4. 어린이집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(개정 2014.2.12)
  5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
  6. 부모에 대한 상담·교육 (개정 2014.2.12)
  7.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(신설 2014.2.12)
  8.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(신설 2014.2.12)
  9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(개정 2014.2.12)
- ② 센터는 김포시(이하 “시“라 한다)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구성)**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등을 둔다.

-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.
- ③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.
- ④ 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, 영유아 및 아동보육 전문가등의 전문인력을 상근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**제14조(운영의 위탁)**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,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한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, 신청서류, 수탁기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15조(위탁의 취소)**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2. 수탁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3. 수탁자가 제12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
4.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

**제16조(주민의견 수렴)**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과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에 있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, 보육교사, 보호자 등 그 밖에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**제17조(센터의 재정)**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.

#### 제4장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

**제18조(설치)**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12조 각 호에 따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4.17>

② 시장은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아·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, 야간 어린이집, 방과후 어린이집, 시간 연장형, 다문화 등 특수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명칭)** 시립어린이집 명칭은 “시립○○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**제20조(업무)** 시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
2. 영유아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
3.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4. 시립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21조(위탁운영)**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최초 위탁시에는 공개경쟁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.

**제22조(위탁계약)**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,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,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이상 5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,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시장은 재 위탁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공개경쟁 모집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.

**제23조(운영재정)** 시장은 위탁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에 필요한 경비를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9.27>

**제24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·수탁 협약서에 따른다.

**제25조(위탁의 취소)**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9.4.17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, 시는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기존 제2항 삭제, 제3항에서 이동 2019.4.17>

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 <기존 제4항에서 이동 2019.4.17>

#### 제26조 <삭제 2017.9.27.>

제27조(지도감독)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년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·감사를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, 그 이행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.

제28조(손해배상)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###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

제29조(보조금의 지급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관계 법령과 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
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등 지원
3.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[중전의 29조3호는 삭제, 29조 4호에서 이동 <2015.9.30>]
4. 교재·교구비 [29조 5호에서 이동<2015.9.30>]
5. 대체인력 인건비 [29조 6호에서 이동<2015.9.30>]
6.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(신설 2015.9.30)[중전의 29조6호는 29조5호로 이동<2015.9.30>]
7. 장애아 보육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[중전의 29조7호는 삭제, 29조 8호에서 이동<2015.9.30>]
8.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(개정 2015.9.30)
9.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(개정 2015.9.30)
10.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속수당 [중전의 29조10호는 삭제, 29조 11호에서 이동<2015.9.30>]
11.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비 (신설 2015.9.30)[중전의 29조11호는 29조10호로 이동<2015.9.30>]

12.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(개정 2015.9.30)
13.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(개정 2015.9.30)
14. (삭제 2015.9.30.)

**제30조(보조금의 반환)** 보조금을 지급받는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자, 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 (개정 2015.9.30)

1. 시설운영이 정지·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
2.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
3.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
4.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31조(정산보고)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14.12.26., 2021.7.2.)

## 제6장 지도 및 감독

**제32조(지도 감독과 명령)**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·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. (개정 2015.9.30)

**제33조(보고와 검사)**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(개정 2015.9.30)

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

**제34조(시정 또는 변경 명령)** 시장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4조에 따라,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때는 위반의 내용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·운영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## 제7장 보칙

**제35조(준용)**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, 「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따른다. [전문개정 2017.9.27.]

**제3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